

case
7

합금강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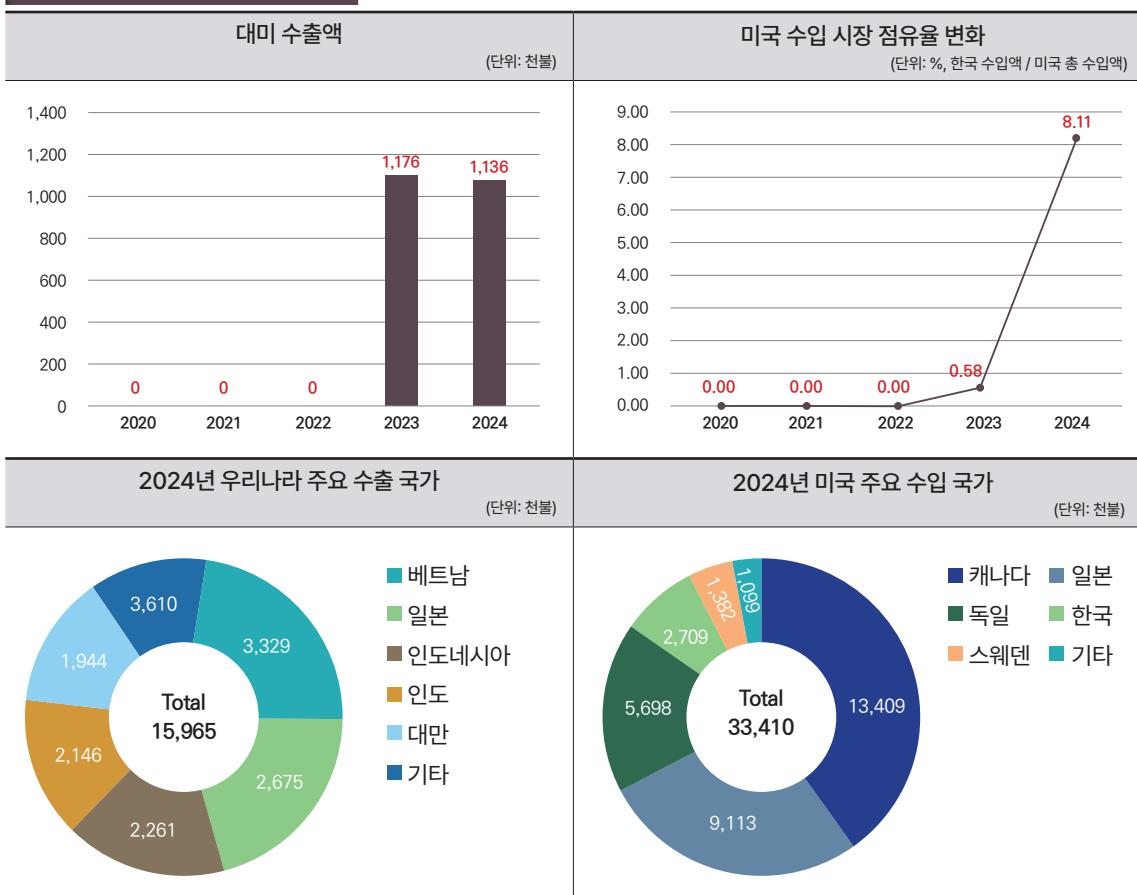
사례명	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0819 (2024.06.26.)
사실관계	프랑스에서 제조된 합금강판을 영국으로 운송하여 화학조성 확인 후 워터젯 절단 및 치수 절단된 합금강판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강판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시점에도 강판이였고 영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시점에도 여전히 강판이며, 단순히 강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절단하는 공정은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p> <p>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프랑스이며,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일 수 있음</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226.91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226.91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0819 (2024.06.26.)

사실관계

요청자 Align Precision Philadelphia, LLC (대리인: Trans-Border Global Freight Systems)

제품명	• Invar 36 합금강판
제품	• 반도체 산업에서 마이크로칩 제조 장비의 부품용으로 사용
완제품 HTSUS	• 7226.91.5000

제조공정



01

프랑스에서
합금강판 생산



02

영국으로 운송



03

화학 분석 및
절단



04

포장 후
미국 수출

상세공정

프랑스

- 프랑스산 철강 슬래브를 열간압연
- 어닐링 수행
- 쇼트 블라스트 처리하여 합금강판 생산
- 영국으로 운송

영국

- 화학 성분 분석
- 워터젯을 통해 절단
- 목재 상자에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 강판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시점에도 강판이였고 영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강판이며, 단순히 강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절단하는 공정은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2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함
-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판정 결과

- ▣ 해당 제품(HTSUS 7226.91.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기타 의견

- ▣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 ✓ Section 232의 철강 추가 관세 판단 시에도 프랑스산으로 간주하며,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시사점

- 단순 절단 및 화학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재료를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변경시키지 못함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819 (2024.06.26.), <https://rulings.cbp.gov/ruling/N34081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